

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(사업장용, '20.11.18.)

◆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근로자 일반 특수건강진단을 정상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건강진단 실시 유예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알려 드립니다

1 적용 기준

- 대상: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
- 기간: '20. 11. 19.(금) ~ 별도 해제시까지
-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의 발령 기준

2 「사회적 거리두기」 기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

1 일반건강진단

- '20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는 '20.12.31.까지 실시
 - 특히, 필수노동자*는 가급적 연내 일반건강진단 실시
 - * 보건·의료, 돌봄서비스, 택배·배달, 대면업무, 환경, 미화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
 - 다만, ①검진기관의 사정(1일 수검인원 제한 등)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렵거나* ②근로자가 유예를 원하는 경우 '21.6.30.까지 실시
 - * 사업주는 검진기관 사정으로 유예가 불가피한 경우 검진기관에 '20.12.31.까지 접수

☞ '20.12.31.까지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검진기관 사정 이외의 사유로 미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

- '20년 일반건강진단을 유예하여 '21.6.30.까지 실시한 근로자는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은 '22년에 실시
 - 다만, 비사무직 노동자(검진 주기: 매년)가 '21년 하반기에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실시해야 함

☞ (주의) 일반건강진단을 '21.6.30.까지 유예하여 실시한 후 '21년 하반기에 '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비사무직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

- 점진 당일 이상 소견(발열, 기침 등)이 있는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유예* 하고, 증상이 완치된 후 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 실시
 - * 근로자·사업주는 ‘유예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’를 건강진단기관에 제공 요청
- **가급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및 1.5단계에 실시 권고**

< '20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 실시기간 >

구 분		일반건강진단		
		20년	21년	22년
사무직 (2년주기)	'20년 연내 실시를 원하는 자	~ 20.12.31까지	비대상	'22.1.1~12.31까지
	유예를 원하는 자	~ 21.6.30.까지		
비사무직 (1년주기)	'20년 연내 실시를 원하는 자	~ 20.12.31.까지	'21.1.1~12.31.까지	
	유예 원하는 자	~ 21.6.30.까지		
	유예자 중 '21년 검진 희망자	· '20년:~ 21.6.30.까지 · '21년: '21.7.1 ~ '21.12.31.까지		

2 특수·배치전 건강진단

1. 기본원칙

- 폐기능 검사 등 검사 중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('20.1.29~2.27.)* 및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 ('20.2.28~6.14.)**는 **'20.12.31.까지 실시**

* 「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('20.1.29.)」

** 「특수·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('20.2.28.)」

- '20.6.15.이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* 및 본인이 원하여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('20.9.10.~10.11.)**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 (1일 수검인원 제한 등)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려운 경우 **'21.3.31.까지 실시**

* 「특수·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('20.6.15.)」

** 「특수·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('20.9.10. 및 '20.9.21.)」

- 특수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의 다음 특수건강진단 주기일은 실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계산
-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(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3)을 유예한 경우 근로자 배치일을 기준으로 시기를 계산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하되

-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배치전건강진단과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한번에 실시 가능
- **검진 당일 이상 소견(발열, 기침 등)이 있는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유예** 하고, 증상이 완치된 후 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 실시
 - * 근로자·사업주는 검진기관에 ‘유예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’ 제공 요청
-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시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**동시 실시 권장**

2. 단계별 실시 방안

- 「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시 기준*」에 따라 건강진단 유예
 - 유예한 근로자의 특수·배치전건강진단은 거리두기 단계가 유예 기준 단계 아래로 내려간 날(유예사유 해지일)부터 **3개월* 이내** 실시
- (유예기한) 「유예 사유 해지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」과 「'21.3.31.」 중 먼 날 기준으로 실시, 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진단기관의 사정 등으로 실시가 지연*되는 경우는 추가 3개월 연장 가능
 - * 건강진단기관에 접수일, 검진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
- 유예 대상이더라도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(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제외)
 -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 실시가 필요하다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‘해당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’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

* 【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시 기준】

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방역수칙*을 준수하여 건강진단 실시 * 3. 건강진단 시 준수사항 참조		「유예를 원하는 근로자」 건강진단 유예	「7개 유해인자*를 제외」하고 건강진단 유예 ★ 7개 유해인자도 근로자가 원하면 유예 * 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, 디메틸포름아미드, 벤젠, 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, 사염화탄소, 염화비닐, 아크릴로니트릴	「모든 유해인자」에 대해 건강진단 유예

3 건강진단 시 준수사항

1 사업주

- ① 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안내
- ② 출장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사업장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 소재한 건강진단기관 이용을 자제하고, 건강진단 기관의 감염예방 및 관리 조치에 협조
 - 가능한 경우 환기가 원활한 검진 장소 제공
 - 검진 전날 발열, 호흡기 증상이 있는 수검자 확인하고 이상자는 건강진단기관 관계자에게 알리기
 - 동시에 여러 수검자가 모이지 않도록 부서 또는 공정별로 건강진단 장소에 시차를 두고 이동하도록 노동자에게 안내

2 수검자

- ① 발열, 호흡기 증상이 있는 수검자는 건강진단 전 사업장 또는 건강진단기관 관계자에게 알리기
- ② 마스크 착용, 손씻기(손소독) 및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기
- ③ 수검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④ 청력검사 대상은 청력부스 진입 전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를 사용해 손을 소독하고 하고 수검
- ⑤ 건강진단 실시를 위해 사업장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보다 높은 지역에 있는 건강진단기관 방문 자제

❖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「폐기능검사* 및 치아부식증 검사**」는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되는 시점까지 다음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

* 폐기능 검사: 폐활량검사,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 연속측정, 비특이기도 과민검사

** 치아부식증 검사가 있는 유해인자는 불화수소, 염화수소, 질산, 황산, 염소가 있음

○ (폐기능검사) 특수·배치전건강진단 1차 항목에 「폐기능검사」가 있는 유해인자 27종은 해당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, 건강진단결과를 판정

※ 특수건강진단 의사는 수검자의 이전 폐기능 검사결과 및 문진(mMRC 호흡곤란 점수나 COPD 평가검사 활용 권장), 호흡음 청진,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진단 판정

- 다만, 특수건강진단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감염예방 조치를 하고 폐기능검사를 실시

[특수건강진단 1차 검사항목으로 폐기능검사 대상 유해인자 27종]

- 1.글루타르알데히드, 2.디에틸렌트리아민, 3.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(무수말레인산),
- 4.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, 5.베릴륨, 6.코발트(분진 및 흡에 한정함),
- 7.톨루엔-2,4-다이소시아네이트, 8.톨루엔-2,6-다이소시아네이트, 9.프탈릭언하이드라이드(무수 프탈산),
- 10.헥사메틸렌 다이소시아네이트, 11.황화나켈, 12.(무기)주석과 그 화합물, 13.마네탈 오일미스트(광물성 오일),
- 14.곡물 분진, 15.나무 분진, 16.니켈 및 그 화합물, 17.광물성 분진, 18.면 분진, 19.석면분진,
- 20.산화철(분진 및 흡에 한정함), 21.유리섬유 분진, 22.안티몬과 그 화합물, 23.알루미늄과 그 화합물, 24.용접 흙,
- 25.카드뮴과 그 화합물, 26.크롬과 그 화합물, 27.텅스텐과 그 화합물

○ (치아부식증 검사) 특수건강진단의 치아부식증 검사는 치과의사가 치아부식증에 관한 과거력과 현재 증상에 대한 문진을 통해 구강 내 시진 등 추가 진찰 없이 실시 가능

- 이 경우 과거력 및 증상 문진으로 평가한 결과임을 검사표에 기록

- 다만,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치아검사(부식증, 교모증) 및 치주 조직검사표 작성 등 치과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 예방 조치하고 실시